외국어교육원운영규정

제 정	1997. 3.
개 정	2000. 3.
개 정	2007. 3.
개 정	2014. 4.

제1조 (명칭) 본 교육원은 우송대학교 부설 외국어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설립목적) 교육원은 외국어교육 및 한국어 교육 일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.

제3조 (사업)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
1. 외국어 교육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
2.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이론 및 방법 연구
3. 학술논문지, 언어교육 교재 및 기타 출판물 간행
4. 언어연구 및 외국어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
5.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

제4조 (조직) ①교육원에는 원장 1인, 원어민 디렉터와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, 연구하기 위한 연구원을 및 원어민 행정업무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.(개정2014.04.01.)

②교육원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③교육원의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원어민 디렉터기는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④교육원 원어민 디렉터는 매니저, 코디네이터를 추천하고, 교육원 원장이 임명한다.(제정2014.04.01.)

⑤교육원의 원장과 원어민 디렉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2014.04.01.)

⑥원어민 디렉터 및 코디네이터의 수당은 별도의 지침 [별표 1]에 의거 지급한다.(제정2014.04.01.)

제5조 (재정)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교비지원금, 수강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6조 (기타) 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